

심사보고서

의료비후불제 용자금 채무보증 동의안

의료비후불제 용자금 채무보증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16
----------	-----

2022. 12. 16.(금)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2년 10월 31일

다. 회부일자 : 2022년 11월 2일

라. 상정일자 : 2022년 12월 6일

-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정진원 보건복지국장)

가. 제안사유

- 우리사회가 그간 건강보험 보장성이 지속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조차 없어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임.
- 충북도에서는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가칭)착한은행에서 의료비를 대납하고, 환자는 무이자로

장기 분할상환하여 또 다른 어려운 환자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순환적 의료복지제도인 ‘의료비후불제’ 를 도입하고자 함.

- 의료비후불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착한은행 설립과 병행하여 2023년도에는 금융기관의 정책자금을 재원으로 의료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대여하고, 무이자 장기 분할상환 방식으로 회수하는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할 계획임.
- 이에 금융기관의 채무보증 요청에 따라 의료취약계층의 상환능력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채무(미상환금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제3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업내용 : 금융기관(농협)에서 의료비를 대납하고, 환자는 무이자 장기분할 방식으로 상환하여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최소화
- 채 권 자 : 농협은행(농협은행 충북영업본부)
- 주채무자 : 의료비후불제 용자금을 받은 도민*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장애인
- 용자금액 : 25억원(농협정책자금)
- 용자조건 : 1인 300만원 한도 / 3년 무이자 분할상환
- 보증기간 : 대출금 전액 상환시까지
- 보증범위 : 의료비후불제 대출 원리금
(미상환 대출 원리금에 대하여 道에서 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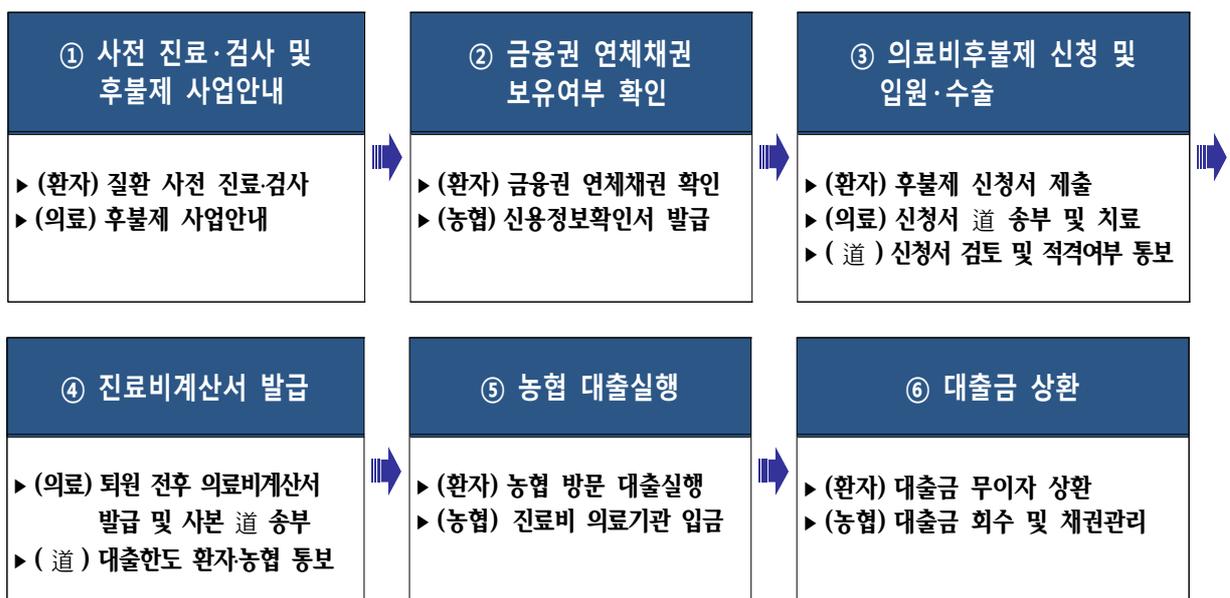
3. 검토보고 요지 (김대진 수석전문위원)

가. 제출배경

- 본 의료비후불제 용자금 채무보증 동의안은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계층이 경제적 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대여하고, 무이자 장기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게 하는 의료복지제도인 ‘의료비 후불제’ 를 도입하고자 충청북도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검토

- 본 동의안의 사업대상은 65세 이상인 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112,358명*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1,915명, 차상위계층 10,311명, 보훈대상자 19,937명, 장애인 50,195명
- 사업비는 25억원으로 구성하고, 대출한도는 1인 50~300만원, 사업량은 최소 830명, 최대 5,000명이고, 3년간 무이자 상환함.
- 의료비후불제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음.



다. 종합 검토의견

- 「지방재정법」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등) 제2항에 따른 의료비후불제 용자금 채무보증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사항으로,
- 본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제2항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완료하였고, 이에 대한 채무보증을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본 사업을 통해 의료취약계층이 적기에 질병치료를 받아 삶의 질 향상과 기대수명 연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다만, 시범사업이므로 향후 사업 확대 운영 시에는 사업 지속가능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특히, 향후 착한은행 설립에 있어서는 채용마련, 설립절차 이행 등 면밀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의료비후불제 용자금 채무보증 동의안」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수정동의안

의안 번호	116-1
----------	-------

제출연월일 : 2022년 11월 22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에 대한 소득기준은 생계급여^{30%} > 의료급여^{40%} > 주거급여^{46%} > 교육급여^{50%} = 차상위계층^{50%} 순으로 구분
- 소득기준에 따른 사업대상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할 경우, 생활환경이 더욱 열악한 생계·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를 지원하지 못하는 역차별 발생
- 지원대상 한정에 따른 이해충돌 및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다수의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내용 : 금융기관(농협)에서 의료비를 대납하고, 환자는 무이자 장기분할 방식으로 상환하여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최소화
- 채권자 : 농협은행(농협은행 충북영업본부)
- 주채무자 : 의료비후불제 융자금을 받은 도민*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장애인
- 융자금액 : 25억원(농협정책자금)
- 융자조건 : 1인 300만원 한도 / 3년 무이자 분할상환
- 보증기간 : 대출금 전액 상환시까지
- 보증범위 : 의료비후불제 대출 원리금
(미상환 대출 원리금에 대하여 道에서 보전)

3. 참고사항

- 원안·수정안 대비표 붙임
-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 기본계획(안) 붙임
- 채무보증 요청 공문(농협 중복영업본부)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5. 기타 : 해당없음

원 안	수 정 안
<p>2.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 금융기관(농협)에서 의료비를 대납하고, 환자는 무이자 장기분할 방식으로 상환하여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최소화 ○ 채 권 자 : 농협은행(농협은행 충북영업본부) ○ <u>주채무자 : 의료비후불제 용자금을 받은 도만*</u> <li style="padding-left: 20px;">* <u>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장애인</u> ○ 용자금액 : 25억원(농협정책자금) ○ 용자조건 : 1인 300만원 한도 / 3년 무이자 분할상환 ○ 보증기간 : 대출금 전액 상환시까지 ○ 보증범위 : 의료비후불제 대출 원리금 (미상환 대출 원리금에 대하여 道에서 보전) 	<p>2.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 금융기관(농협)에서 의료비를 대납하고, 환자는 무이자 장기분할 방식으로 상환하여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최소화 ○ 채 권 자 : 농협은행(농협은행 충북영업본부) ○ <u>주채무자 : 의료비후불제 용자금을 받은 도만*</u> <li style="padding-left: 20px;">* <u>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장애인</u> ○ 용자금액 : 25억원(농협정책자금) ○ 용자조건 : 1인 300만원 한도 / 3년 무이자 분할상환 ○ 보증기간 : 대출금 전액 상환시까지 ○ 보증범위 : 의료비후불제 대출 원리금 (미상환 대출 원리금에 대하여 道에서 보전)

□ 필요성

- 건강보험 보장성은 지속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조차 없어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임
- 목돈 지출의 부담감으로 제때 질병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계층에게 알맞은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13개소(종합병원급 의료기관 12개소, 농협 충북영업본부)
- 사업대상 : 65세 이상인 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112,358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1,915명, 차상위계층 10,311명, 보훈대상자 19,937명, 장애인 50,195명

- 대상수술 : 임플란트 식립, 슬관절·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및 심·뇌혈관 수술(시술)

- 사업비 : 2,500백만원(농협 정책자금)

- 도비소요액 : 923백만원(농협 정책자금 이자 및 미상환금 보전)

- 미상환금 등 보전 : 773백만원(미상환율 30% 적용)

- 이자 보전 : 150백만원(연이율 6% 적용)

- 대출한도 : 1인 50~300만원 / 3년간 무이자 상환

- 사업량 : 830명^(최소)~5,000명^(최대)

- 사업내용

- 의료취약층의 의료비를 대납(농협)하고, 환자의 여건에 따라 무이자 장기할부 방식으로 상환하여 의료비 부담 최소화

- 도에서는 의료비 대출자금(농협)에 대한 미상환액 및 이자 보전

□ 착한은행 설립 방안

- 착한은행 설립은 재원마련, 설립절차 이행 등 중장기 검토 필요

- 일반(인터넷)은행, 금융재단, 사업위탁 등 다각적 방안에 대한 전문가 논의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의료비후불제 및 착한은행 설립 관련 유관기관 등 자문 : 수시
- 충북연구원 정책연구과제 의뢰 : '22.06.
- 주요병원장 등 간담회(인수위) : '22.06.
- 민간전문가 등 자문회의 : '22.06.
- VIP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정부 협조 건의 : '22.07.
- 의료비 후불제 TF팀 구성(팀장배치 9.3.) : '22.07.
- 전문가 자문위원 위촉 및 회의(3회) : '22.08.
- 충북연구원 정책연구과제 완료 : '22.09.
- 사업추진 관련 금융기관 등 관계자 면담 : '22.09.
- 참여기관(의료기관, 농협 등) 간담회 : '22.10.
-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 '22.10.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보건복지부) : '22.10.
- 전문가 자문위원 회의 : '22.10.
- 도의회 간담회 및 채무보증 동의안 상정 : '22.12.
- 기관별 시범사업 업무 매뉴얼 등 수립 : '22.12.
- 의료비후불제 참여기관 협약 및 시범사업 개시 : '22.12.

□ 他 제도와 차별성

- 기존의 무상지원제도와는 달리 정책수요자의 사회적 주체로서 책임과 역할(융자금 상환) 부여

□ 기대효과

- 적기에 질병치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영양공급 및 사회적·정서적 안정 등) 및 기대수명 연장 제고
- 지원받은 의료비를 상환하여 다른 어려운 도민에게도 도움을 주는 선순환(善循環)적 의료복지제도 정착

중요 문서 무단 반출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출력물은 모니터링 됩니다.

농업인과 함께! 국민과 함께!



수신 : 충청북도지사

(경유) 보건정책과

제목 : 충청북도 의료비후불제 용자금 채무보증 요청

1. 충청북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래의 충청북도 의료비후불제 용자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충청북도 의 채무보증을 요청합니다.

아 래

- 가. 사업명칭 : 충청북도 의료비후불제
- 나. 채 권 자 : 농협은행(주) 충북영업본부
- 다. 주채무자 : 충청북도 의료비후불제 용자금을 받은 도민
- 라. 용자금액 : 이십오억원(25억원)
- 마. 보증기간 : 대출금 전액 상환시까지
- 바. 보증범위 : 의료비후불제 대출 원리금* 끝.

충 북 영 업 본 부



시행 : 영본(충북)43103-50571 2022.10.31. 접수 :
 우 2861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구룡산로 23 / 전화 043-229-1533 / FAX
 043-257-3555
 담당 : 기획역 김준규 (E-mail : dokky55@nonghyup.com) / 공개구분 : 부서공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등) 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이하 “주채무” 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충청북도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등 보건의료자원이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5조(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